

제 호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

- 명 칭
- 대표자
- 소재지
- 정보관리 분야

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